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년 10월 17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전 예슬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된 소형 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, 공공주택 공급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 설치 기준 신설 (안 별표 2의 제5호)

3. 조례안 : 불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5년 10월 22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립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회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4
 - 전자메일 : jw3788@korea.kr

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 설 물	설 치 기 준
5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, 오피스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, 세대·가구·호실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.○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37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0.3대로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